

## 교육혁신·품질센터 규정

제정 2017. 08. 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교육혁신·품질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교육혁신·품질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품질관리 관련 사업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융·복합 등 신교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
4.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품질 인증에 관한 사항
6. 온사람인증제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각 캠퍼스에는 캠퍼스별 센터를 둘 수 있고, 센터장 및 각 캠퍼스별 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한다

② 센터장은 각 캠퍼스별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와 연구원,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혁신·품질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을 두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운영계획의 수립·보고) 센터장은 매 학년도 초에 센터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교학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